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59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10월 29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1. 10. 29. ~ 2021. 11. 12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용민	58.11.16.	0178200274100001900	₩7,533,000	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1길
2	문명복	53.09.06.	0178200274100001894	₩1,506,600	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219번길
3	서경희	66.03.15	0178200274100001623	₩8,668,80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
4	이종재	69.09.18	0178200274100001776	₩9,558,000	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52번길
5	임경식	75.02.08.	0178200274100006531	₩9,558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
6	임경식	75.02.08.	0178200274100001780	₩19,116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
7	주식회사 멜본	110111-4308***	0178200274100001627	₩13,275,000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
8	주식회사 멜본	110111-4308***	0178210274100002899	₩26,370,000	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
9	㈜네스트	131311-0091***	0178200274100006530	₩11,947,500	경기 평택시 평택로17
10	㈜네스트	131311-0091***	0178200274100001620	₩23,895,000	경기 평택시 평택로17
11	㈜인터페어항공	110111-2778***	0178200274100001315	₩3,186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(주)클럽이글	110111-2435***	0178200274100001948	₩7,761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57
13	(주)클럽이글	110111-2435***	0178200274100005838	₩10,965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57
14	문지영패션	110111-5097***	0178200274100001778	₩13,275,0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
15	주식회사 하나산업	170111-0709***	0178210274100001088	₩3,862,500	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0, 8139, 8140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